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가단227603(본소), 2023가단315234(반소) 판결
[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 · 기타(금전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
담당변호사 이순호

피고(반소원고)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
담당변호사 박지훈
변 론 종 결 2024. 4. 12.
판 결 선 고 2024. 5. 24.

주 문

-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,
가. 별지 부동산 목록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모듈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,
나. 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2. 1.부터 2023. 12. 29.까지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)에게 65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2. 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이 사건 태양광설비의 설치 장소

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애당초 원고에게 C에 태양광발전소 모듈 및 구조물(이하 ‘이 사건 태양광설비’)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가. C에는 30k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나. 피고가 C에서 사용해오던 전기량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로서는 C에 이 사건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.

2. 원고의 채무불이행

설령 피고가 애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설비를 C에 설치해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설치 당일 갑자기 변심하여 이 사건 태양광설비를 D 축사 건물 위에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,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에서 요구되는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가. 원고의 지위, 이 사건 태양광설비 설치계약 중 인허가절차의 내용 등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

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위 설치에 따른 전기를 판매하고, 그 판매에 따른 전기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측의 선로용량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부합하게 이 사건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.

나.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태양광설비와 관련된 잔여 선로용량이 없어,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설비에서 발생한 전기를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.

3. 결론

가.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2023. 11. 15.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, ① 이 사건 태양광설비를 철거하고,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3. 2. 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12. 2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, 피고의 주장 중, ①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, ②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).

나.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한웅희

별지